

서울특별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3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여성 공예인 창업 공간 및 창업지원 정보 제공, 판로개척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에 의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여성공예창업 전문 지원시설로서
- 나.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여성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북부여성창업플라자(가칭)
- 소재지 :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(공릉동 622)
- 시설규모 : 지하 1층, 지상 4층(연면적 5,723.57㎡)
- 개소일자 : 2017. 1.(예정)
- 이용대상 : 여성공예인 및 일반시민(노원구민)
- 공간구성 : 점포형 창업실(53실), 공예마켓, 공예체험장, 공동작업장, 마을커뮤니티센터, 창업지원센터 등
- 근거법령 :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2항, 성평등기본조례 제28조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년(2017. 1. 1. ~ 2018. 12. 31.)
- 위탁사무 :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- 입주업체 지원, 디자인·마케팅·홍보 지원, 전시기획 운영 등 여성공예창업 지원
 - 시민창작교육,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
 - 공예마켓, 공예체험장, 마을커뮤니티 센터 운영
 - 시설물 유지관리, 교육장 대관 등 공간 운영
 - 기타 여성공예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
- 소요예산 : 3,185,728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성평등기본조례 제41조 제1항(사무의 위탁)
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대규모 주요재산 기본활용 계획(시장방침 제138호, '14. 5.)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전문창업 지원, 생활창작지원 등 다양한 전문적 기능을 요구받는 공간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처리의 유연성 및 효율성의 강화가 필요하며
- 시민, 타기관/조직, 지역사회의 인적·교육적·기술적 자원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매칭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업 능력이 필요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2항

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○ 성평등기본조례 제28조

제28조(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,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하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성평등기본조례 제41조 제1항

제41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와 위탁방법 저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이현정(☎ 2133-5013)